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4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주철현·김문수·양부남

권향엽・박정현・조계원

문금주 • 이개호 • 박홍근

한정애 · 복기왕 · 송기헌

채현일 · 황정아 · 박홍배

어기구 • 이병진 • 박희승

안호영 • 박지원 • 윤준병

박균택 • 민형배 • 조인철

임호선 · 정진욱 · 문대림

이재관 · 이학영 · 위성곤

이워택 · 신정훈 · 서삼석

이기헌 • 전종덕 • 정동영

김원이 · 김윤덕 · 안도걸

이성윤・김 윤・전진숙

강준혁 의원(4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제정됨. 이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 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둠.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조직인 여순사건진상조사 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이 구성단계부터 다수 구성원의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작성기획 단 본연의 업무인 여순사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연구과제라는 명 목으로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음. 심지어 각 연구과제는 개 요에서부터 역사왜곡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작성기획단의 편향적인 역사 인식과 더딘 실무작업 속도로 인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자료 분석은 법정 기한인 2024년 10월 5일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대 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고, 과거사 회복에 필수적인 형사상 조치인 특별재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75년 전에 발생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희생자·유족에 대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희생자외에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조응하도록하는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규정례를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에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과 희생자·유족 폄훼를 방지하고 과거 사와의 진정한 화해를 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희생자"를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11. 제12조의3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 2. 유족 대표
- 3.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4항 후단 중 "중립"을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을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이 조에서 "기 획단"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획단은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그에 첨부된「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의3(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 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희생자로서"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희생자로"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회) ① (생 략)	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2
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희생자</u> 의 의료지원금 및 생	10. <u>희생자 및 유족</u>
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	
한 사항	
<u> <신 설></u>	11. 제12조의3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u>11.</u> (생 략)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4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u>관계 공무원 및</u>	<u>다음</u> 각 호의 사람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으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	<u><</u> 후단 삭
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제>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	
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u>신</u> 설> <신 설>

⑤ ~ ⑨ (생 략)

제4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 원회)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 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u>중립</u>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 기 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 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 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
	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u>2. 유족 대표</u>	
	3. 여수·순천 10·19사건에	<u>관</u>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u>람</u>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	4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	위
	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중</u>	립
	과 균형있는 역사관	
_	⑤ (현행과 같음)	
제	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집 및 분석) ①	

조사 개시일부터 <u>2년</u>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 다.

② ~ ⑤ (생 략)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 (생 략)<신 설>

<u>5년</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1년
<u>10·19</u> 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이 조에서
<u>"기획단"이라 한다)</u>
운영할 수 있으며, 기획단은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정
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
<u>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
<u>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u>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
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의 명령 제3호」,「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3호」,「보병제5여단고등군법회의명령 제17호」와그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본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 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

<신 설>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 ① (생 략) <u><신 설></u>

②・③ (생략)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기급신청) ① <u>희생자로서</u>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의3(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

<u>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u> 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 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 지급신청) ① <u>희생자 또는</u> 유족으로서-----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②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내에 하여야 한다.	